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. 4. 26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2. 4. 27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9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. 5. 7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청소사업소장 박한권)

□ 제안이유

○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반입장에서 근무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사기양양 및 안정된 근무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현행 부천시일용인부임노임단가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조정함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상향조정 하는데 현재의 수당과 개정시 수당금액은 얼마인가?	○ 현재는 부천시일용인부임지급규정을 적용하여 1일 21,620원이며, 개정시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40,920원으로 조정됨
○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시 계약으로 고용을 해야 하는데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는가?	○ 계약을 하고 계속 상주하면서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, 주민감시요원들이 3개월 또는 6개월 기준으로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됨
○ 과거 부천시 일용직들은 300일 미만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주민감시원은 계약을 하지 않는가?	○ 계약을 하지 않음
○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시 대책은?	○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데 주민감시원에게는 수당명목으로 지급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음

○ 퇴직금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에
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?

○ 향후 규칙으로 정하겠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593호
의결년월일	2002. 5. 10 (제95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4. 26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○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반입장에서 근무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사기양양 및 안정된 근무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

주요골자

○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현행 부천시일용인부임노임단가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조정함(안 제11조제2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노임단가는 당해연도 부천시일용인부임지급지침을 적용하며, 수당은 위탁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다. 다만, 노임단가는 사무보조, 청사관리 등의 인부임으로 한다.”를 “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지역주민의 감시) ①(생략)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<u>노임단가는 당해 연도 부천시일용인부임지급지침을 적용하며 수당은 위탁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다. 다만, 노임단가는 사무보조, 청사관리 등의 인부 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1조(지역주민의 감시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수당은 <u>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.</u></p>